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129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현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795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12,500,000원, 보증기한 2017. 5. 3.(이후 2021. 4. 29.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 1) 소외 회사는 2016. 5.경 D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20. 8.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2) 이에 원고는 2020. 11. 23. D은행에 151,682,9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재산처분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20. 7. 28.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피고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8. 4.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7954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E기관, D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 2)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불과 22일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0. 11. 23.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불과 22일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등을 참작하면,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자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과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부족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주류도매업을 하는 소외 회사가 거래처인 피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류를 공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으로서 당시 소외 회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책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다.

2) 판단

갑 제6에서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20. 7. 10.부터 이미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해 대금을 연체했고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등기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 후 이루어진 거래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이 사건 계약 후 소외 회사와의 거래 종료 당시에는 외상대금채무가 일부 감소한 점, 이 사건 계약 후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7회만 공급하였음) 불과 15일 만에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담보제공에 상응한 계속적 물품공급의 실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F도 소외 회사의 채무 연체로 인해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로부터 계속 주류를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외상대금채무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외상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다거나 채무 변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계속 공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과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조규설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양주시 대 1256㎡
2. 경기도 양주시 도로 41㎡
3. 경기도 양주시 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층 122.4㎡
1층 5㎡
4. 경기도 양주시 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층 122.4㎡

